항공보안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, 3, 30] [국토교통부령 제838호, 2021, 3, 30, 일부개정]



국토교통부(항공보안과) 044-201-4239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항공보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제1조의2(장비운영자) 「항공보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(이하 "도심공항터미널업자"라 한다)를 말한다. 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**제2조(협조의무자)** 법 제5조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, 2017. 3. 30., 2017. 11. 3., 2018. 12. 21.>
 - 1. 「공항시설법」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
 - 2. 도심공항터미널업자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- 제3조(기본계획의 통보) 법 제9조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도심공항터미널업자
 - 2.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가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
 - 나.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
 - 다.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
 - 라. 「항공안전법」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
 - 3.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

[전문개정 2018. 12. 21.]

- 제3조의2(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(이하 "국가항공보안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(이하 "공항운영자등"이라 한다)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
 - 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(이하 "항공보안장비"라 한다)의 관리
 - 3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
 - 4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(이하 "우발계획"이라 한다)
 - 5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
 - 6.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
 - 7.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>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**제3조의3(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)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, 2015. 11. 5.>
 - 1.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
 - 2.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제3조의4(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 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
 - 2.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

- 3.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
- 4. 공항시설의 경비대책
- 5.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
- 6. 승객 ·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
- 7. 통과 승객 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 \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
- 8.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
- 9.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
- 10.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
- 11.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
- 1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 · 전달체계
- 13.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 유지
- 14.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
-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,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 다.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제3조의5(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
- 1.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 시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
- 2.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
- 3.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
- 4.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 ,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
- 5.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
 - 나. 비행 전 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
 - 다. 계류(繁留)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, 탑승교, 출입문,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
 - 라.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
 - 마. 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
 - 바.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
 - 사.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 , 인수 절차
 - 아.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
 - 자.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
 - 차.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
 - 카.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
 - 타.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
 - 파.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
- 6.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
- 7.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
- 8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
- 9.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
- 10.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유지
- 11.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
- 12. 화물터미널 보안대책(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)
- 13.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
- 14.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
- 15.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
- 16.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
- 17.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
- 18.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
- 19.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
- 20.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
- 21.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

- 22.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제3조의6(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)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·항공기정비업체·공항상주 업체(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),항공여객·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 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
 - 2.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
 - 3.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
 - 4.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
 - 5.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
 - 6.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
 - 7.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**제3조의7(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)**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>
 - 1.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
 - 2.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
 - 3.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,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
 -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제4조(보호구역의 지정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
 - 4. 4., 2017. 11. 3.>
 - 1.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
 - 2. 출입국심사장
 - 3. 세관검사장
 - 4. 관제탑 등 관제시설
 - 5. 활주로 및 계류장(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 , 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)
 - 6.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
 - 7. 화물청사
 - 8.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- 제5조(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·변경 및 취소)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(이하 "보호구역등"이라 한다)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 - 1.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
 - 2. 보호구역등의 도면
 - 3.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
 - 4. 지정기간(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②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 - 1. 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
 - 2.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
 - 3.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
 - ③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, 11, 3,>
 - 1.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
 - 2.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

- 제6조(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)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 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 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「보안업무규정」제36조 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. <신설 2012. 9. 24., 2017. 11. 3., 2021. 3. 30.>
 - ③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24.>
 - ④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, 차량을 운행 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24.>
 - ⑤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 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24.>
 - ⑥ 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2. 9. 24.>
 -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. <개정 2012. 9. 24.>

[전문개정 2010. 9. 20.] [제목개정 2012. 9. 24.]

- 제7조(항공기 보안조치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 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>
 - 1.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
 - 2.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 - 3.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
 - 4.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
 - 5.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한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할 것
 -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 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항공기의 외부 점검
 - 2. 객실, 좌석, 화장실,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
 - 3.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
 - 4.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
 - 5. 위탁수하물,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
 - 6.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
 - 7.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
 - 8.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
 - 9. 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
 - 10.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, 명령 절차 및 확인
 -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탑승계단의 관리
 - 2. 탑승교 출입통제
 - 3.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
 - 4. 경비요원의 배치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[제목개정 2014. 4. 4.]

- **제8조(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)**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승객 ·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
 - 가. 인천공항의 경우
 - 1) 「경비업법」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
 - 2)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
 - 3)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

- 나.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
 - 1) 「경비업법」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
 - 2)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
 - 3)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
-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
 - 1) 「경비업법」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
 - 2)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
 - 3)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
- 2.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
 - 가. 「경비업법」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
 - 나.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
 - 다.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

- **제8조의2(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)** ①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"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, 국적,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.
 - 1. 승객의 성명
 - 2. 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(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)
 - 3. 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
 -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,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 4. 4.]
- 제8조의3(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) 법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4. 4.]

- 제8조의4(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5.>
 - 1. 「경비업법」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
 - 2. 보안검색인력 명단 및 해당 인력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
 - 3. 보안검색위탁업체 추천서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11. 5.〉
 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5.>

[본조신설 2014. 4. 4.]

제9조 삭제 <2014, 4, 4,>

- **제9조의2(상용화주의 지정기준)**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색장비를 갖출 것
 - 가.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위한 엑스선 검색장비
 - 나.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검색장비로 하는 경우에는 엑스선 검색장비,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
 - 2. 항공보안검색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
 - 3. 항공화물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

- 가. 화물을 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구역과 분리되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
- 나.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이 완료되지 않은 항공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설
- 4. 상용화주 지정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총 24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
-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적합할 것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「경비업법」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**제9조의3(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)**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, 3, 23,, 2014, 4, 4,, 2015, 11, 5.>
 - 1.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 공청장에게 제출할 것
 - 가. 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
 - 나.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(국제물류주선 업자만 해당한다)
 - 다. 삭제 <2014. 4. 4.>
 - 라. 삭제 <2014. 4. 4.>
 - 마. 화물운송 거래실적
 - 바. 항공화물의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
 - 사.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
 - 1의2. 제1호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 - 2.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의 항공보안 감독관(이하 "감독관"이라 한다)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. 다만,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.
 - 3. 지방항공청장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
 - ② 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
[본조신설 2010, 9, 20.]

제9조의4(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) ① 삭제 <2014. 4. 4.>

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, 2015, 11, 5.>

[본조신설 2010. 9. 20.]

- **제10조(기내식 등의 통제)**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·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
 - 2.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 화인되지 아니한 경우
 - 3.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

- 제11조(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)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,항공운송사업자,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, 2015. 9. 2., 2015. 11. 5.>
 - 1. 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2.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

- 3.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
- 4. 무기 · 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

- 제12조(비행 서류의 보안관리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비행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비행 서류의 취급절차 등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
 - 2.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
 - 3. 비행 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
 -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、수하물꼬리표、승객탑승명세서、화물탑재명세서、위험물보고서、무기운송 보고서 등비행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비행 서류를 보존할 때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,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(이하 "전자기록물"이라 한다)로 보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[제목개정 2014. 4. 4.]

- 제12조의2(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)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호 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는 탑승 전까지 그 사실을 유선 등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, 항공기 탑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, 2017. 11. 3.>
 - 1. 무기 반입자의 성명
 - 2. 무기 반입자의 생년월일
 - 3.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(외국인만 해당한다)
 - 4. 항공기의 탑승일자 및 편명
 - 5. 무기 반입 사유
 - 6. 무기의 종류 및 수량
 - 7. 그 밖에 기내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
 - ②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2에 따른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고 영 제19조에 따른 무기의 종류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 -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1. 5.>
 - ④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- 제13조(탑승거절 대상자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
 - 2.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
 - 3.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
 - 4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
 - 5.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, 공격적인 행동,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 -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한다.

- 제14조(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 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,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 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
 - 2.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

- 3. 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
- 4.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

- 제14조의2(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)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(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. 이하 "인증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한다.
 -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2.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 - 3.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(테스트 키트)에 관한 서류
 - 4.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
 - 5. 항공보안장비의 구조、운영방법、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
 - 6.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(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능력)을 증명하는 자료
 - 7.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·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 - 8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제14조의3(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)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.
 - 1. 성능 인증 기준
 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일 것
 - 나. 항공보안장비의 활용 편의성,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보안장비일 것
 - 2. 성능 인증 절차
 - 가. 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(이하 "시험기관"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같은 조에 따른 성능평가시험(이하 "성능평가시험"이라 한다)을 받을 것
 - 나.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서와 제14조의2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 제원표 등을 비교·검토할 것
 - 다.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확인할 것
 - ② 인증기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없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(이하 "성능 인증 기준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능 인증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 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
 - ③ 인증기관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**제14조의4(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)** ①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.
 - 1. 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
 - 2.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
 - ②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,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18. 12. 21.]
- 제14조의5(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) ① 장비운영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내용연수 (「물품관리법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)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

증기관이 실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**제14조의6(항공보안장비의 점검)**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 검을 실시해야 한다.
 - 1. 정기점검: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 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
 - 2. 수시점검: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,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, 12, 21.]

- 제14조의7(시험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"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 - ② 법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한다.
 - 1.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,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
 - 2.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
 - 3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 - 4.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 - 5.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.
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의6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 - 1. 시험기관의 명칭
 - 2. 시험기관의 소재지
 - 3. 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
 - 4. 업무 수행 범위
 -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제14조의8(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법 제27조의5제2항에서 "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"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제14조의9(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제14조의10(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)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·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(전자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록을 포함한다)하고 보관·관리해야 하며,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등

- 의 사유로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18. 12. 21.]
- 제14조의11(수수료) ① 법 제27조의6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정기 준은 별표 4와 같다.
 -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1.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제14조의4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수수료
 - 2. 제14조의5에 따른 성능 검사에 관한 수수료
 - ③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, 납부기간,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- 제15조(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>
 - 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 - 2. 교관의 자격 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
 - 3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
 - 4. 교육평가방법
 - 5. 연간 교육계획
 - 6. 교육규정
 -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9. 24, 2013. 3. 23, 2014. 4. 4.>
 -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9. 20.]

- 제16조(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)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·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1.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 · 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
 - 2.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- 3. 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
 - 4.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
 - 5.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, 9, 20.1

- 제17조(정보의 제공)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
 - 2.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 기관
 - 3. 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
 - 4.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

- **제18조(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)**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 <신설 2014. 4. 4.>
 - 1.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
 - 2. 항공보안등급 발령 및 등급별 조치사항
 - 3. 불법방해행위 대응에 관한 기본대책

- 4. 불법방해행위 유형별 대응대책
- 5. 위협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4. 4.>
- 1. 공항운영자의 자체 우발계획
 - 가.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
 - 나.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
 - 다. 항공기 납치시의 대응대책
 - 라.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
- 2.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우발계획
 - 가.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
 - 나. 항공기납치 방지대책
 - 다.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
- 3.항공기취급업체·항공기정비업체·공항상주업체(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), 항공여객·화물터미널 운영자,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의 자체 우발계획
 - 가.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
 - 나.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

[제목개정 2014. 4. 4.]

- 제18조의2(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5.>
 - 1. 우발계획과의 적합성
 - 2.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「국제민간항공협약」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
 -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
 - 2.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
 - 3.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,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
 - ③ 공항운영자등(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 중「항공사업법」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은 자체 우발계획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11. 3.>

[본조신설 2014. 4. 4.]

- **제19조(감독관 운영 등)** ①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명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, 2015. 11. 5.>
 -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항공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4. 4.>
 -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치 지시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하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4. 4., 2015. 11. 5.>
 -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지정·운영 및 점검활동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제19조의2(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)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"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.
 - 1. 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
 - 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
 - 3.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
 - 4.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
 - 5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
 - 6. 법 제15조제1항,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
 - 7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

- 8.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
- 9.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
- 10.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
-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 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신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4. 4. 4.]

제20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1. 23.]

부칙 <제838호, 2021. 3. 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